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21
----------	------

2021년 11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김기덕 의원 외 16명
-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병물 아리수 생산 시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제한과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병물 아리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 음수대의 설치·보급 및 음용을 촉진하고 병물 아리수의 공급 및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중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과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9월에 발표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병물 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을 50만병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음.

연도	2017년	⇒	2018년	⇒	2019년 ~
생산·공급량	602만병		250만병		50만병 ¹⁾

- 동 조례안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재도 본부장 방침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 보다는 ‘공급 대상 규정’으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²⁾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제2항의 일부 내용은 안 제10조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생활치료센터내 보급을 위해 80만병 생산

2) 제명, 안 제1조, 제4조, 제10조

- 또한,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학교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보급,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1년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22,866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후 신규 설치보다는 유지관리³⁾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 이외에 별도의 음수대 설치·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수돗물 음용 촉진’의 경우 강제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에 따른 교체 이외에 연간 약 28억원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보다는 공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중복되거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21
----------	------------

제안년월일: 2021년 11월 26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병물 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보다는 공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중복되거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함
- 내용 중 “사용 제한”을 “사용”으로 함(안 제1조,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
- 중복 및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아리수의 사용 제한”을 “아리수 사용”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안 제3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용 제한”을 “사용”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을 “(병물 아리수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게 하는 등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안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u>설치와 청소 등 위생 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생략)</p>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u></p> <p><u>2. (현행과 같음)</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p>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u><삭제></u></p> <p><u>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현행과</p>

<신 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음수대의 설치·보급 및 음용을 촉진하고 병물 아리수의 공급 및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사용하게 하는 등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음)

<삭 제>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u>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 <u><신 설></u></p> <p>2. (생 략)</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 <u><신 설></u></p> <p>③ (생 략)</p>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
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